

장마철, 식중독 발생이 더욱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마철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반대로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식중독 예방에 더욱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집중 호우로 하천 등이 범람하면 흙이나 주변 환경에 존재하던 식중독균이나 노로바이러스 등이 지하수로 침투하거나 채소류 등으로 옮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식약청은 남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됐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장마철 식중독 위생 관리 7대 요령’을 잘 지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1)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채소, 과일류나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할 것
- 2)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실 것

- 3) 칼, 도마, 행주 등은 끓는 물 또는 가정용 소독제로 자주 살균할 것
- 4)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도 섭취 시 주의하고, 유통기한 및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
- 5) 싱크대, 식기건조대, 식탁 등에 물기가 남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게 되므로 항상 깨끗하게 청소할 것
- 6)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7)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류 등은 깨끗한 물에 담가 세척한 후, 흐르는 수돗물로 2~3번 세척할 것

□ 식약청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설사나 구토 증세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료 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입물가 안정에 따른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 축소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 대상품목이 확대됐지만 전반적인 수입물가 안정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

상품목이 축소 조정되어 전체 할당관세 품목수는 상반기 75개에서 하반기 48개로 줄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밀가루, 밀, 커피원두, 카세인 등 일부 품목이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할당관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적용됩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인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식품관련 적용품목 및 세율(%)

| |
|---|
| 대두(5→0), 설탕(40→35), 원당(3→0), 맥주맥(30→15), 향료(6.5→4), 맥아(30→15) |
|---|

※자세한 내용은 정책포탈 홈페이지(korea.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먹거리수입, 관세청이 사수한다

관세청은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을 위하여 “수입물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수행해 오고 있으며, 불법행위 차단을 통관단계에서 유통단계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유통이력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물품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국민건강 관련 물품에 대한 안전경보 발령시스템 구축, 수입검사 강화(검사율 6%→12% 상향), 전담분석팀 운영과 함께 탈크(활석) 통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비식용의 식용둔갑 등 위해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법방지 예방효과는 물론 유해물품 발견 시 Recall 조치 등 신속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통관안전대책 추진전략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로서,

- 이번 유통이력 품목확대(비식용천일염·대두유, 냉동 금밀복, 안경테)는 유통이력제도의 관세법 도입('09.5.27), 세부 추진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과 더불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어온